



COVID-19 <u>사업장</u> 지침:

확대된 개인 케어 서비스

배포 날짜: 2020년 6월 12일

권장 시행일: 빨라도 2020년 6월 19일

모든 지침은 인구 10만명당 증례, 검사 양성 비율, 및 의료 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및 검사를 지원하는 현지의 준비 태세를 비롯한 현지 역학 데이터를 검토한 후 카운티 보건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행해야 합니다.



목적

케어, 및 미용 서비스, 전기 제모, 네일 살롱, 보디 아트 전문가, 문신 시술소, 피어싱 숍, 및 (비-의료 환경에서 시행하는) 마사지 요법에 적용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와 고객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자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안전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때에만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법에 명시된, 또는 규제력을 지닌, 또는 단체 교섭에 의한 직원의 권리를 철회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와 같이, 완전하지도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 또는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¹의 요건 같은 기존의 안전성 및 건강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¹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중보건 지침 및 주/지방 정부 명령의 변경사항을 최신 상태로 숙지합니다. Cal/OSHA는 근로자를 COVID-19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 보다 포괄적인 지침을 갖추고 있습니다. CDC는 기업 및 고용주를 위한 <u>지침</u>에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작업장 유형별 계획

- 모든 장소에 서면으로 된 작업장 유형별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작업 구역과
 작업 임무에 대해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각 시설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계획을
 시행합니다.
- 직원들 간에 COVID-19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파악합니다.
- 해당 계획에 대해 직원과 직원 담당자를 교육하고 소통합니다.
-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해당 계획의 준수에 대해 평가하고 확인된 결함을 문서로 기록하고 시정합니다.
-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고 업무에 관련된 요인 중에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규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추가 증례를 방지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가깝게 접촉한 사람들(6피트 내에서 15분 이상)을 식별하고 COVID-19 양성 직원(들)과 가깝게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작업장 내에 발병을 초래할 수도 있어
 작업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확산 방지 방법, 그리고 어느 기저 건상 상태로 인해 개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더 쉽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을 사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점검하는 등, 자택에서 자가-선별검사를 하는 것.

- 직원이 잦은 기침, 열,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최근의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 <u>CDC가</u> 설명한 COVID-19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원 또는 그 직원이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COVID-19로 진단을 받은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가슴에 지속적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거나, 혼돈이 느껴지거나, 입술이나 안면이 푸르스름한 것을 포함하여, 증상이 심해지면 진료를 받을 것. 업데이트 및 추가 세부 정보는 <u>CDC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u>
- 직원이 <u>CDC 지침</u>에 따라 싱크대나 손 세척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또는 최소한 60% 에탄올(선호됨)이나, (성인의 감독 없이 아동이 제품에 접할 수 없는 경우) 70% 이소프로판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중요성.
-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서도,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아래의 물리적 거리두기 섹션 참조).
- 다음을 포함하여, 안면 덮개의 적절한 사용:
 - 안면 덮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PE)가 아닙니다.
 - 안면 덮개는 착용자 부근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안면 덮개를 착용했다고 해서 물리적 거리를 두고 손을 자주 씻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면 덮개는 눈과 입을 덮어야 합니다.
 - 직원은 안면 덮개를 착용하거나 조절하기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작업 교대 후 안면 덮개는 세척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 시설에 근무하는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도 COVID-19 예방 정책을 제대로 교육받고 필요한 용품 및 PPE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와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 재정적으로 더 쉽게 집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고용주 또는 정부가 후원하는 휴가 수당에 대한 정보.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 및 근로자 재해 보상 급여에 대한 직원의 권리,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따른 COVID-19의 업무 관련성 추정을 포함하여, 병가 및 COVID-19에 대한 근로자 재해 보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조합니다.



개인 통제 조치 및 선별검사

-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모든 직원과 납품업체, 계약업체, 또는 작업장에 들어가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체온/증상 선별검사자가 근로자와
 되도록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선별검사자와 직원은 둘 모두 선별검사를 하는
 동안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선별검사의 적절한 대체 방식인, 자가-선별검사를 자택에서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교대 근무를 위해 자택을 떠나기 전에 선별검사를 시행했는지 확인하고, 위의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따르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 몸이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근로자와 고객은 집에 머물도록 권장합니다.
-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눈 보호구, 장갑 및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자주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더해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증상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을 선별검사하거나
 공동으로 만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일회용 장갑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장갑 착용은 자주 손 씻기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자주 손 씻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자는 고객과 상호소통하는 내내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시설 내에서 안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벗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안면 덮개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직원에게 청결한 안면 덮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고객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이 방문하기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확인하고, 고객 또는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COVID-19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묻습니다. 고객이 증상이 있다는 대답을 하면, 예약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그런 소통은 전화, 앱,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하여 고객에게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이나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약 시간에 맞추어 시설로

와야 한다고 다시 알릴 수 있습니다. \사전 선별검사 규약을 시행하고 물리적 거리두기 규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객이 예약없이 직접 와서 서비스를 받는 영업 방식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미성년자와 동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추가의 친구나 가족도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고객에게 알립니다.
- 고객은 시설에 도착하는 즉시 체온 및/또는 증상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의 징후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고객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다시 잡을 준비를 합니다.
- 입장 조건일 수 있는 일련의 지침을 고객을 위해 내보입니다. 그 지침에는 안면 덮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다른 고객과 물리적 거리 유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지침은 서비스 제공의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그 지침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픽토그램(그림 문자)을 포함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예: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규약

- 동료 근로자, 동료 세입자, 부스 임차인, 및/또는 직원이 각 교대조의 시작과 끝, 또한 고객이 오고 갈 때마다 청소 및 소독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처 구역과 같은, 통행량이 많은 구역, 그리고 계단, 계단통, 및 난간을 포함하여 입구와 출구 구역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 카운터, 접수처 구역의 의자,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전화, 화장실, 및 손씻기 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기존 위생 및 위생시설 규약과 청소 절차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합니다. 병원 등급인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 제품을 사용하여 처치용 테이블, 안면 받침대, 스툴, 베개 받침, 문손잡이, 사이드 테이블, 의자 등, 고객이 접촉한 어떤 것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접촉 시간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신종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표식된 소독제,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또는 해당 표면에 적합한 알코올이 최소 70% 들어 있는 알코올 용액을

사용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업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시사항과 Cal/OSHA의 요건에 대한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청소용 및 소독용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척제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에서 권장하는 <u>천식</u>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따릅니다.

- 의자 시트와 같은 다공성 표면은 간편하게 소독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안감으로 덮는 것, 또는 고객이 사용한 후에 안감을 청소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작업장과 처치실의 모든 기기는 고객이 사용하고 다른 고객이 사용하기 전에 적절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 핀셋이나 가위와 같은, 비-다공성 도구의 경우, 그 물품을 뜨거운 비눗물로 씻어서 물적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그 도구를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뒤이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 내내 EPA에 등록된 소독제에 도구를 담가 둡니다. 접촉 시간이 끝나면 물품을 제거하고, 씻어내고, 깨끗한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 확대하는 LED 램프, 뜨거운 물수건 워머, 및 미용 기구와 같은 전기 도구의 경우, 스프레이로 청소하거나 닦아서 물적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뒤이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 내내 EPA에 등록된 소독제 분무기로 청소하거나 닦습니다.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기기의 플러그가 뽑혀 있도록 하고, 모터에 분무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터치스크린, 키보드, 리모컨, 및 ATM 기계 같은 전자 장치의 경우, 눈에 띄는 오염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모든 세척용 및 소독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닦아낼 수 있는 덮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이 나와 있지 않으면, 알코올-계 물티슈 또는 최소 60% 알코올이 함유된 분무제를 사용하여 터치스크린을 소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물기가 고이지 않도록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 <u>재향군인병(Legionnaires' Disease, 급성 폐렴의 일종)</u>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을 장기간 폐쇄한 후에 모든 급수 시스템(예: 식수대)이 사용하는 데 안전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리넨 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그 밑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리넨 제품을 치워 버리고 침대나 테이블을 적절히 소독해야 합니다. 처치용 테이블은 매번 사용한 후 깨끗한 처치용 테이블 종이, 깨끗한 수건, 또는 깨끗한 시트로 덮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매번 처치를 끝낼 때마다 사용한 리넨 제품, 수건, 및 담요를 비롯한 기타 장막, 그리고 고객용 장막을 치워낼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더러운 세탁물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용한 리넨 제품은 처치 공간 외부에 위치한, 비닐봉지로 안을 대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분산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더러운 리넨 제품은 상용 세탁 서비스에 의해 또는 적어도 25분 동안 최소한 화씨 160도의 물에 담그는 것이 포함되는 세탁 과정에 의해 적절히 세탁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모든 리넨 제품은 청결하고, 뚜껑이 있는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바닥을 쓰는 방식 또는 병원체를 공중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진공 청소를 하고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근로자는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거나, 수술복을 입거나, 청결하고 세탁이 가능하거나, 있는 경우, 일회용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적절히 청소하기 힘든 표면이 있는 물품(예: 소형 쿠션, 패브릭-안감을 댄 의자, 시트 쿠션)은
 치워 버리는 것을 고려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옷을 놓아두거나 넣는 표면이 딱딱하고, 다공성이
 아닌 의자, 또는 표면이 딱딱하거나 플라스틱인 대형 바구니를 갖추어 둡니다.
- 손이 닿은 부분과 고객과 상호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객을 위한 잡지, 예술 서적, 커피, 물, 셀프서비스용 스테이션(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스테이션은 제외) 및 기타 물품을 비롯한, 편의용품을 접수처 구역에서 치워 버려야 합니다. 식품이나 음료를 스테이션이나 처치실에 두지 않습니다.
- 모든 선반과 진열장을 비롯하여, 여하한 제품 진열 구역도 빈틈없이 청소합니다. 여하한 열린
 "테스트" 제품도 치워 버리고,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관행을 중단합니다. 이런
 구역에 표지판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이곳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 신용카드와 비접촉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전자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고객에게서 현금으로 거스름돈이 필요 없는 정액이나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수도꼭지, 비누 및 종이타월 디스펜서를 모두 비접촉식으로 바꾸고 비접촉식, 자동 손소독제 디스펜서를 들여놓는 것을 고려합니다. 비누 디스펜서와 종이타월 디스펜서를 정기적으로 채워 놓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 접수처 구역과 작업 장소에 손소독제와 소독제 물티슈 같은 적절한 위생제품을 비치합니다.
- 근로자가 교대하는 동안 청소를 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임무는 직원의 직무 일부로서 근무 시간 중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및 기타 작업 용품을, 되도록,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PPE(개인 보호 장비)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 휴게실에서 (커피 머신을 포함하여) 식품 및 음료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 보안 규약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면, 처치실의 창문을 열어놓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동이 쉬운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가능한 최고 효율로 바꾸고, 모든 작업 구역에서 외부 공기를 더 많이 들여오고 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타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위에 언급한 청소 및 소독 규약 외에도, 미용, 이발 및 전기 제모 업소는 <u>캘리포니아주 이미용</u> <u>위원회</u>의 기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카운티 수준에서 업소에 추가 규칙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긴밀한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고객이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런 조치에는 칸막이나 시각적 신호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바닥에 표시하기, 색깔 있는 테이프 사용하기, 또는 근로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기호로 표시하기).
- 각 작업장 구역 사이는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하거나, 그 사이에 불침투성 방벽을 사용하여 고객을 다른 고객 및 직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예약에 시차를 두어 접수처의 혼잡을 줄이고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청소와 소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일일 고객 수를 줄이거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고객이 예약없이 직접 와서 서비스를 받는 영업 방식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가능하면, 고객이 도착할 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가상 체크인 기술을 시행합니다. 고객에게 접수처 구역에 모여 있기 보다는 밖에서 또는 차 안에서 대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접수처 구역에는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만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의자와 소파를 치워

버리거나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등,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원하도록 배치를 바꾸어야합니다.

- 접수처 데스크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다른 구역에는 플렉시 유리(Plexiglas)나 기타 방벽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와 고객 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직무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고객 및 다른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옵션(예: 재고 관리하기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행정 업무를 보기)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근로자에게 악수, 주먹 부딪히기, 포옹, 또는 여타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유사한 인사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 욕실, 복도,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근로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방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 휴식 시간 동안 근로자들을 격리시키고 모이지 않게 합니다. 가능하면, 물리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늘을 만드는 덮개와 좌석을 설치한 실외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직원 회의를 조정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과 전화 또는 웨비나를 통해 회의를 합니다.



미용사, 스킨 케어, 및 미용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근로자는 항상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이 안면 덮개를 착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안면 가리개를 (안면 덮개와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 일회용 장갑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내 착용해야 하며, 한 고객의 세션을 마친 후에는 모든 기구와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처치실에서 나가기 전에, 장갑을 벗어서 버리고, 적절한 손 소독제를 바르거나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종이 타월이나 소독용 물티슈와 같은, 미리 비치해 놓은 1회용 방벽을 사용하여 처치실 문을 여닫고 처치실에서 나갑니다.
- 왁스 포트의 내용물이 떨어져 새 왁스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남은 왁스를 비워 버리고 왁스 포트를 씻고 소독한 다음 새로운 왁스를 채워 넣습니다. 일회용 도포구는 사용한 후 즉시

비닐봉지로 안을 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어야 하며 일회용 비닐봉지로 안을 대어야 합니다.



전기 제모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전기 제모 시술자는 고객에게 처치를 제공하는 동안 항시 안면 덮개를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 제모 시술자는 고객이 안면 덮개를 착용할 수 없는 안면 또는 목 부위에 처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눈을 보호하는 안면 가리개를 (안면 덮개와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부위에 처치를 받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받는 내내 안면 덮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핀셋, 롤러, 및 파침기 캡은 한 고객에게 사용 후 다음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적절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압처리기를 사용하거나 해당 물품을 파우치에 넣어 봉하고 건조 멸균기에 넣어 소독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파우치는 다음 고객 서비스 세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봉인을 뜯지 말아야 합니다.
- 가능하면, 프로브 팁이나 캡이 필요 없는 일회용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출점을 줄입니다. 일회용 프로브 팁이나 캡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번 고객에 사용한 후 제모기 바늘/프로브 홀더의 탈착 가능한 팁이나 캡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전기 제모에 사용하는 바늘은 미리 포장된 일회용이어야 하고 사용한 직후 승인된 주사기 용기에 담아 소독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주사기 용기는 생의학 폐기물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 전기 제모 바늘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 생성되는 열은 살균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탈착 가능한 부품을 포함하여, 초음파 세척기, 겸자, 및 모든 용기는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라 다음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네일 살롱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근로자는 항시 안면 덮개, 또는 필요한 경우 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호흡기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제8편 제5155조에 설정된 허용 노출 한도 미만으로 노출을 줄일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화학 물질 노출이 있는 경우, 미립자 필터와 결합된 올바른 화학 물질 카트리지가 있는 탄성중합체 호흡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술하는 동안,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눈을 보호하는 안면 가리개를 (안면 덮개와 함께)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를 받는 내내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회용 장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내 착용해야 하며, 한 고객의 세션을 마친 후에는 모든 기구와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장갑을 벗어 폐기하고 적절한 손 소독제를 바르거나 비누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페디큐어 보울은 살균제, 살진균제 및 바이러스 박멸제라는 라벨이 있는 EPA 등록 액체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혼합물에 대한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월풀 풋스파,에어젯 대야 또는 파이프 없는 풋스파를 소독하려면, 최소 10분 동안 소독제를 순환시켜야합니다. 월풀형이 아닌 풋 대야와 욕조를 소독하려면, 소독제를 대야 또는 욕조에 최소 10분 동안 담가 두어야 합니다. 풋스파, 대야 및 페디큐어 보울은 일회용 플라스틱 깔개를 사용하더라도 한고객의 서비스가 끝나면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네일 살롱은 가능하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미용 위원회 지침에 따라, 일회용이 아닌 용품은 한 고객의 서비스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 골판지 파일, 드릴 및 버퍼용 샌드밴드, 일회용 샌들, 발가락 벌리는 기구, 및 도포구와 같은, 모든 일회용 물품은 한 번 사용하고 즉시 뚜껑이 달리고 안에 비닐봉지를 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 접촉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니큐어 진열대를 치워 버립니다. 매니큐어 진열대가 없으면, 색상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색상 팔레트는 매번 고객이 사용 후에는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매니큐어 진열대를 치워 버리지 않으면, 매니큐어를 진열대에 되돌려 놓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하기 위해 손이나 발을 밑으로 내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와 고객 사이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각 작업장에는 매니큐어 전문가 한 명만 배치하고, 고객이 매니큐어와 페디큐어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합니다.
- 받침대가 있는 팬 또는 고정형 팬과 같은, 팬을 살롱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람이 부는 팬에서 나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직접 가는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팬을 끄거나 치워 버리는 경우, 고용주는 가능한 열 위험을 계속 인식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네일 살롱은 각 네일 테이블의 매니큐어 냄새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환기 장치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디 아트 전문가, 문신 시술소 및 피어싱 숍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근로자는 항상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술하는 동안,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눈을 보호하는 안면 가리개를 (안면 덮개와 함께)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고객은 문신 또는 피어싱 서비스를 받는 내내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회용 장갑은 문신 또는 피어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내 착용해야 하며, 한 고객의 세션을 마친후에는 모든 기구와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장갑을 끼기 직전과 장갑을 벗은 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입/코에 피어싱과 문신을 하는 서비스는 중단합니다.
- 의자는 고객 사이의 거리가 최소 6피트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가로 칸막이나 기타 불침투성 방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한 번에 한 고객에게만 문신 또는 피어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의료 환경에서 행하는)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손을 씻으라고 요청합니다.
- 근로자는, 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내 눈을 보호하는 안면 가리개를 (안면 덮개와 함께)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객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는 내내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세척 및 소독 규약을 지원하기 위해 처치 테이블 배치의 변경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일회용 안면 받침대 덮개를 사용하는 것 및/또는 테이블, 테이블 워머, 베개 받침, 및 그 외에 다음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전 벗겨서 교체할 수 있는 베개커버와 같은 세탁 가능한 방벽이 있는 기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방벽은 지켜야 하는 청소 및 소독 규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면 마사지 또는 안면에 직접 손을 대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위를 처치할 때는 비-라텍스 장갑을 사용합니다. 고객이 안면 덮개를 벗어야 하는 경우, 안면 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서비스의 마지막 부분에 손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는 마사지 서비스를 끝내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¹ 질병에 취약한 인구층에 대해 추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케어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u>Cal/OSHA</u>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u>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u> 및 <u>캘리포니아주</u> <u>공중보건부(CDPH)</u>의 지침은 물론 Cal/OSHA의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그러한 지침이 변경되는 바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